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(안)

2005. 3

산업자원부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) 다음 각호의 공공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2.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
3.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4.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
5.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· 정부출연기관 ·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
6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
제13조제1항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· 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(이하 “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”라 한다)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”를 “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

사용기자재·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(이하 “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”라 한다)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동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에너지사용기가재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 각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특정에너지 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, 공장·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신축건물에 대한에너지효율등급 인증)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건물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9조제5항중 “개선기간”을 “개선기간 및 이행절차”로 한다.

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정부는 제1항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의 제목을 “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관리기준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 중 “에너지사용자”를 “에너지다소비사업자”로 하며, 동조제2항중 “에너

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
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”를 “제4항에
의한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”로 하며, 동조제1항 및 제2
항을 각각 제24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.

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3년
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 등을 진단(이하 “에너지진단”이라 한다)
받아야 한다.

제25조제1항중 “에너지관리대상자”를 “에너지다소비사업자”로 하고, 동조
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삭
제한다.

제33조를 제25조로 하고, 제목을 “개선명령 및 자금지원 등”으로 하며, 동
조제1항중 “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”를 “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”로 하며,
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하
여 제24조제4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
있으며, 홍보, 금융·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
원을 할 수 있다.

제34조의 제목을 “목표에너지지원단위의 설정 및 달성”으로 하고, 동조의 본
문을 제1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산업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지원단위의 조기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제품에 대해 당해 생산자가 목표에너지지원단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

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금융·세제상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
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에너지지원단위의 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
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2조(에너지기술전문인력의 양성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 분야의
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의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제5호 중 “대체에너지”를 “신재생에너지”로 하고, 동조제8호를 다음과
과 같이 한다.

8.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

제100조제1항제2호 중 “제33조의”를 “제25조제1항의”로 한다.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개정안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p>제3조의 2(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) 다음 각호의 공공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.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3.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.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.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·정부출연기관·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제13조(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, 에너지이용의 합리화, 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·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(이하 “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”라 한다)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	제13조(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) ①----- ----- -----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·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(이하 “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”라 한다)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<p><u>다.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<u>1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</u></p>	
<p><u>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</u></p>	
<p><u>3.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</u></p>	
<p><u>4. 국·공립 연구기관</u></p>	<p><u><신 설></u></p>
	<p><u>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2 각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, 공장·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② (생략)</u></p>	<p>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7조의2(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)</u>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건물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<u>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9조(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)</u></p> <p><u>①~④ (생략)</u></p> <p><u>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, <u>개선기간</u>,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제19조(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)</u></p> <p><u>①~④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⑤ ----- <u>개선기간</u> 및 <u>이행절차</u>, ----- .</u></p>

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
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이
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
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도 기타 필요
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제24조(에너지관리기준 등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(이하 “에너지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(이하 “에너지관리지도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제33조(개선명령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
에너지관리지도결과, 에너지가 손실되
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대상자
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
수 있다.

<신설>

<작제>

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

④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3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 등을 진단(이하 “에너지진단”이라 한다) 받아야 한다.

⑤----- 제4항에 의한 에너지진
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-----

-----.

제25조(개선명령 및 자금지원 등) ①

----- 에너지다소비사업

자에게 -----

----- .

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

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제24조 제4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홍보, 금융·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목표에너지원단위)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(이하 “목표에너지원단위”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p>	<p>제34조(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달성을) ①-----</p> <p>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조기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대해 당해 생산자가 목표 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금융·세제상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42조(에너지기술전문인력의 양성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p>

제76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	제76조(사업)-----.
1.~4. (생략)	1.~4. (현행과 같음)
5. <u>대체에너지</u> 개발사업의 촉진	5. <u>신재생에너지</u> 개발사업의 촉진
6.~7. (생략)	6.~7. (현행과 같음)
<u>8.집단에너지사업</u>	<u>8.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</u>
9.~11. (생략)	9.~11. (현행과 같음)
제100조(과태료)① (생략) 1. (생략) 2. <u>제33조의</u>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~⑦ (생략)	제100조(과태료)① (생략) 1. (생략) 2. <u>제25조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~⑦ (현행과 같음)